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원직장복귀 산재장애인을 중심으로 -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 종 범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원직장복귀 산재장애인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홍 준 형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 종 범

공기업정책학과 김종범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전 영 한 (인)

부위원장 김 봉 환 (인)

위 원 홍 준 형 (인)

국문초록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이다. 원직장 복귀를 포함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는 이들의 고용 확대 뿐만 아니라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산재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유지 제고 방안을 위한 경험적·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일자리에서 발생한 질환 및 사고에 의해 주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인원 770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별하고 장애발생 후 직업복귀 상황에 따라 원직복귀자와 퇴사자로 구분하여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집단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요소들을 종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해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 직무관련 요인 등 네 가지 특성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를 구성하고 종속변수인 직업유지와 연결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대도시 거주여부, 부양가족수를, 둘째, 재해관련 요인의 독립변수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을, 셋째, 심리적 요인의 독립변수로는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를,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요인의 독립변수로는 일자리 종류,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해관련 요인 중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가 경증일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요인으로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직무관련 요인으로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별 독립변수들을 선별하여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거주지 변수가, 재해관련 요인 중에서는 장애등급이 직무관련 요인 중에서는 정규직 여부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수 중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유지하였을 경우 직업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장복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첫째, 양적인 직업복귀정책보다는 산재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산재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안한 선별적 정책 수립과 함께 심리적·사회적 재활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고용형태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요어 : 산재장애인, 직업유지, 원직장복귀, 직업재활, 장애인

학 번 : 2013-22634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1. 연구의 대상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장애의 개념 및 직업적응이론	5
1. 장애의 개념	5
2. 직업적응이론	11
제 2 절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실태	16
1. 장애인고용 현황	16
2. 산업재해 현황	20
3. 재활사업의 도입	21
4.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현황	24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29
1.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2. 재해관련 특성	32
3. 직무관련 특성	33
4. 심리사회적 특성	33
5.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34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36
제 1 절 연구모형	36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37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가설	37
2. 재해관련 특성에 대한 가설	38
3.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가설	39
4. 직무관련 특성에 대한 가설	40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41
1. 종속변수	41
2. 독립변수	42
제 4 장 실증 분석	45
제 1 절 변수별 기술통계 분석	45
1. 독립변수	45
2. 종속변수	56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57
1.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57
2. 변수의 신뢰도 분석	59
제 3 절 회귀분석 및 연구가설 검증	62
1.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62
2. 재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64
3. 심리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66
4. 직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68
5. 직업유지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검증	70
6. 가설검증 결과	74
제 5 장 결 론	7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75
제 2 절 연구의 의의	78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0

참고문헌	81
Abstract	87

표 목차

[표 2-1] WHO의 장애분류 변천 과정	6
[표 2-2] ICF의 건강분류체계 개요	7
[표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10
[표 2-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17
[표 2-5] 전년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20
[표 2-6] 공단의 주요 재활사업 내용	23
[표 2-7] 재활서비스 이용 인원	23
[표 2-8]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현황	25
[표 2-9] 사업장규모에 따른 직업배치 유형별 직업복귀 현황	26
[표 2-10] 성별 직업복귀 현황	27
[표 2-11] 연령별 직업복귀 현황	28
[표 3-1] 연구모형	37
[표 3-2] 직업유지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44
[표 4-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6
[표 4-2] 분석대상자의 장애유형	48
[표 4-3] 분석대상자의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49
[표 4-4] 분석대상자의 장애수용도 평균	50
[표 4-5] 분석대상자의 일상생활만족도 평균	51
[표 4-6] 분석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53
[표 4-7] 분석대상자의 직종별 특성	54
[표 4-8] 분석대상자의 일자리만족도 평균	55
[표 4-9] 분석대상자의 직업유지 현황	56
[표 4-1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58

[표 4-11] 장애수용도 신뢰도 분석 결과	60
[표 4-12] 일상생활만족도 신뢰도 분석 결과	61
[표 4-13]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1)	63
[표 4-14] 재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2)	65
[표 4-15] 심리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3)	67
[표 4-16] 직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4)	69
[표 4-17] 직업유지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검증(모형5)	71
[표 4-18] 가설 검증의 결과	74

그림 목차

[그림 2-1] ICF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8
[그림 2-2] 미네소타 직업적응이론	15
[그림 2-3] 장애인, 전체 인구 경제활동상태 비교	17
[그림 2-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2013년도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3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으로 운용되고 있는 산재장애인 직업복귀제도의 효과성을 되짚어 보고,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적·실질적인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에 대하여 본 연구가 주제로 삼는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에서 산재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산재보험제도의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직업복귀율은 매우 중요한 성과지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 중심의 산재보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는 일반적으로 원직장으로의 복귀여부가 결정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의 재취업이 결정되는 흐름을 보이며 장애인에게 있어 원직장 복귀는 장애발생 이후 최초의 재취업기회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원직장 복귀는 장애인 개인에게는 실업기간을 줄이고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민소영, 1995).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성공적으로 직업에 복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는 숙련된 노동력의 상실을 방지하며 손실된 임금보전이나 불필요한 요양기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보전하고 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가 지연되거나 성공적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갈등, 사회부적응 등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박수경, 2012).

국가 및 사업장에서의 지속적인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9만 명의 산재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요양)와 생계 지원(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직업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사회적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자 수 92,256명, 경제적 손실은 19조 2,564억 원에 이른다(고용노동부, 2013). 산업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직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있는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장애인들이 재활과정을 통하여 직업적 능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은 의료적 재활만큼 중요한 일이다. 산재 후 취업은 자활 기반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사회에 통합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이승렬, 2002).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복귀 정책 서비스와의 연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근거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산재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복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첫째, 조사대상자 전체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산재장애인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해 본다. 셋째,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을 밝힌다. 넷째,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산재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유지 제고 방안을 위한 경험적·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5월~7월에 조사하고 2013년 12월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공표한 제5차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이하 “PSED”라 한다)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제5차년도 PSED에서 응답 완료한 4,297명 패널인원에서 일자리에서 발생한 질환 및 사고에 의해 주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인원 77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별하여 분석한다.

PSED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5,092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소득, 소비, 일상생활 등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2008년 첫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 7월에 6차년도 실사까지 완료되었다. PSED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5차년도 PSED에서 원표본 5,092명 중 총 4,297명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여 국내외 패널조사 중 최고수준의 원표본 유지율 84.4%를 기록하였다. PSED 대상자는 19세에서 79세¹⁾의 경제활동연령에 포함되는 장애인으로 시도별, 장애유형별, 연령별, 성별로 층화하여 표본추출하였고 최소장애유형에 대해서는 과다배분 적용되었으며, 64세 이하의 표본에 90%, 65-79세에 10%가 배분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패널의 응답은 전국 등록 장애인 모집단을 대표할 만하다(양수정 외, 2011).

1)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5~75세의 패널을 구축하였으므로 5차년도(2012년) 현재 패널의 연령은 만 19~79세이며, 제주지역은 제외됨.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 자료와 통계분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장애에 대한 개념과 직업적응이론 및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등을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설정을 위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소들과 관련한 연구를 분석한다.

실증연구를 위하여서는 제5차년도 PSED에서 응답 완료한 4,297명 패널 인원에서 일자리에서 발생한 질환 및 사고에 의해 주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인원 770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별하여 이를 다시 집단별로 구분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장애의 개념 및 직업적응이론

1. 장애의 개념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란 보통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란 인간의 어떤 특수한 상태 즉, 기능의 저하나 이상, 상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보편적인 장애인에 대한 정의로서는 국제연합(UN)의 장애인 권리선언(1975) 제1조에 나타난 장애인의 정의가 있다. “장애인이란 함은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일상의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1979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앞둔 UN총회에서는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장애의 정의에는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어야 함을 밝혔다. 198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결의하면서 handicap(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분리), impairment(개인적 특질인 손상), disability(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문선화 외 2013). 이와 같이 다양한 장애개념의 접근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장애 분류체계이다. 1970년대에 걸쳐 개발되어 1980년에 제시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Handicaps)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장애의 보편적인정의와 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ICIDH는 장애를 질병과 손상에 따른 기능적, 사회적 불리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의학적 접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즉, 손상과 불리는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인과론적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WHO가 ICIDH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1년에 제시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등장은 장애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ICF의 등장을 계기로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넘어 선천적 장애, 노화, 외상을 포함하는 의학적 개념과 함께 고용, 교육, 사회생활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삶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유완식 외, 2012).

WHO의 장애분류 변천 과정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WHO의 장애분류 변천 과정

구분	1980년	1997-1999년	2001년
명칭	ICIDH	ICIDH-시험판 (Beta-1 Draft: 1997) (Beta-2 Draft: 1999)	ICF
분류	질병(disease/disorder)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불리(handicap)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상황적 요소들 · 환경적 요소 · 개별적 요소
특징	개인적 질병 또는 손상으로 인한 장애 및 사회적 불리 발생	개인적 질병과 손상에 의한 장애는 물론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 사회참여를 제한	건강과 관련된 개인과 환경의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능적 장애로 설명

출처: 유완식 외(2012)

ICF에는 ‘건강 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1) ‘신체 기능 및 구조’와 (2)‘활동 및 참여’ 라는 두 가지 기본 목록에 의해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 되어 있다. ICF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건강 상태 속에서 상이한 영역들(예를 들면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기능(functioning)은 모든 신체 기능 및 활동과 참여를 포괄하는 전문용어이며 여기에 대응하여 장애(disability)는 손상(impairment) 및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과 참여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을 포괄하는 전문용어이다. 또한 ICF는 이러한 개념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요인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ICF를 이용하면 다양한 영역 속에서 개인의 기능(functioning), 장애(disability) 그리고 건강(health) 상태를 간편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4).

ICF의 건강분류체계는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 ICF의 건강분류체계 개요

구분	제1부 : 기능과 장애		제2부 : 배경요인	
구성 요소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 및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영역	신체기능 신체구조	생활영역(업무, 일상행위)	기능 및 장애에 외적영향을 미 치는 요소	기능 및 장 애에 내적 영향을 미치 는 요소
구성 물	생체기능상의 변화 (생리학적 변화) 신체구조상의 변화 (해부학적 변화)	능력(capacity): 표준 -환경에서의 과제수행능력 수행(performance): 현재 -환경에서의 과제수행정도	물리적·사회적 ·인식적 측면 의 특징들이 미 치는 촉진효과 혹은 저해효과	개인의 특성 이 미치는 효과
긍정 적 측면	기능적, 구조적으 로 완전함	활동과 참여	촉진요인	적용불가
부정 적 측면	손상	활동제한/참여제한	방해요인/저해 요인	적용불가
		기 능		
		장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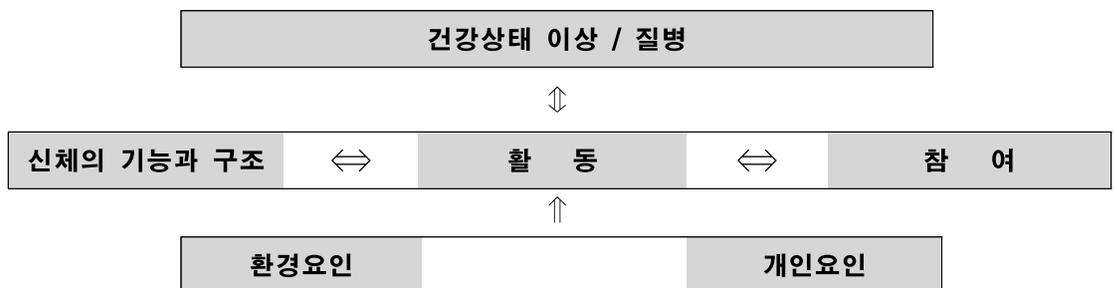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04)

ICF에 의해 비로소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개인의 활동과 사회참여에 장기간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즉 ICF는 신체적·정신적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의 기능손상이라는 전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회복과 활동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준비 정도까지를 모두 장애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ICF는 장애를 원인과 결과라는 평면 도식으로 보지 않고 장애를 다면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장애개념의 출발이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ICIDH의 약점을 보완하였다(이준우 외 2010).

ICF는 건강과 관련된 하나의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ICIDH와는 달리 장애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장애에 대한 개념과 영역을 정밀하게 그려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림 2-1]는 ICF의 구성요소들 간에 상호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장애는 질병의 결과에서 비롯된 상태 구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구성요소의 상태 구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장애는 신체 기능 및 구조의 손상, 활동의 제한, 참여의 제약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래의 도표에 의하면 개인의 장애는 건강상태와 배경요인(환경요인, 개인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림 2-1] ICF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출처: 보건복지부(2004)

배경요인은 건강여건에 있는 개인과 상호작용하고, 그 개인의 기능수준과 정도를 결정한다. ICF는 장애를 원인과 결과라는 평면 도식이 아닌 다면적인 요인으로 보고, 장애개념의 출발이 질병이나 장애 그 자체보다도 건강과 활동수준에 역점을 두도록 설계되어 좀 더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유완식 외 2012).

ICF는 신체적 장애의 측면보다는 기능적 장애의 측면을 강조하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장애 그 자체 보다는 그로 인한 건강과 활동수준에 역점을 두도록 설계되었다. 더욱이 ICF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회정책적 관점을 강조하여 건강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제도,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정책,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금현섭·이석원, 2008).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근간을 찾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자폐성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 및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범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확대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정신자폐성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예정 장애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보건사회연구원, 2008).

[표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대상 장애범주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기타 정신자폐성장애	

출처: 보건사회연구원(2008)

2. 직업적응이론

1) 직업적응의 개념

직업적응에 대한 개념 정리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Ridley(1993)는 직업적응은 개인이 소유한 특성들과 직업이 요구하는 특성들을 서로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그 두 가지의 특성들이 서로 많이 일치될수록 적응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의 업무성과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직업적응이 잘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직업유지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Dawis(1996)는 직업적응이란 직업재활의 과정에서 적합한 직종에 대한 취업의 준비 단계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업적응이란 근무 경력 또는 전체적인 직업생활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적응을 의미한다. 둘째, 특수한 의미에서 직업적응이란 신체적 참을성, 능력개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의 획득, 부적절한 행위의 변화 등을 통해 개인의 직업적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치료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노길명(1973)은 작업환경과 작업환경 내에서의 개인이란 측면에서 개인적 욕구, 인간관계, 역할기대 외에 지역생활적인 측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직장적응이란 노동자가 주어진 작업환경에서 자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원활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으로, 이는 개인적 욕구, 인간관계, 역할기대, 지역사회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적 욕구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속 집단 또는 직장에서의 적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개인적 욕구란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에 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제 욕구를 포함한다. 인간관계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개인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면 집단에서 적응할 수 없다. 역할기대란 집단이 그 자체의 존속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에게 부과한 기대, 욕구,

지시사항 등을 말한다. 이러한 외적 규제로서 주어진 각종 역할기대나 규범 집단 구성원이 자기 인성 내에 동화시키지 못하면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생활로서 개인의 집단 적응은 직장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그 직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2) 직업적응의 주요 이론

이러한 논의들 중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적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직업적응이론으로는 Dawis와 Lofquist의 직업적응이론, Ginzberg의 발달이론, 미네소타 직업적응모형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직업적응이론들의 기본 전제는 개인과 그 개인이 일하는 환경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을 가정하고, 그 요인들의 성격과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Dawis와 Lofquist의 직업적응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정, 지역사회, 직장 등의 환경에 적응해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직장 환경에 일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실제로 개인과 직장 환경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성취한다. 이렇게 인간은 작업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 되고, 일을 통해 개인적 요구를 성취하도록 동기화 된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직업적응인 것이다(이준우 외, 2010).

그래서 Dawis와 Lofquist는 직업적응의 과정을 직업성격과 직업적응 방식으로 설명한다(박성미, 1999). 첫째, 직업성격적 측면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으로 분류된다. 민첩성은 과제를 완성하는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성보다 속도를 중시한다. 역량은 근로자의 평균 활동수준을 말하고,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한다. 리듬은 활동의 다양성을 말한다. 지구력(인내성)은 개인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양을 말한다. 즉 다양한 활동수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적응의 방식에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이 있다. 융통

성은 개인의 작업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가 크더라도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끈기는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성은 개인이 작업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 더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반응성은 개인이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요구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작업환경에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Ginzberg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은 발달적 과정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어려서부터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 것이다. 진로발달은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김농주, 1999; 김병숙, 2007).

첫째, 환상기(Fantasy period)이다. 11세 이전의 유년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초기는 놀이중심 단계이며, 이 단계의 마지막에서는 놀이가 일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현실, 여건, 능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출함으로써 직업세계에 대한 최초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

둘째, 잠정기(Tentative period)이다. 11세~17세(초기 청소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로 흥미, 일의 보상, 가치, 시간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는 흥미단계, 능력단계, 가치단계, 전환단계로 세분화된다. 흥미단계에서는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결정을 한다. 능력단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가치단계에서는 자신의 직업 스타일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환단계를 통해서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과 진로선택에 수반되는 책임의식을 깨닫게 된다.

셋째, 현실기(Realistic period)이다. 17세~청장년기(청소년 중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능력과 흥미가 통합되는 단계이다. 가치의 발달, 직업적 선택의 구체화, 직업적 유형의 명료화 등이 가능해지며 이 시기는

탐색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로 세분된다. 탐색단계 동안 개인은 자신의 진로선택을 2~3가지 정도로 좁혀간다. 대부분 이러한 선택은 애매하며, 확실한 결정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로에 대한 초점의 범위는 훨씬 좁혀진 상태이다. 구체화 단계에서는 특정직업 분야에 몰두하게 된다. 특수화단계에서는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예: 직업선택, 특정 진로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세우며 고도로 세분화·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한다.

끝으로 미네소타 직업적응 모형에 의하면(김병숙, 2007), 직업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그의 직업적인 인성과 작업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직업에 적응한다. 직업적인 인성이란 개인의 직업능력과 직업적 요구에 의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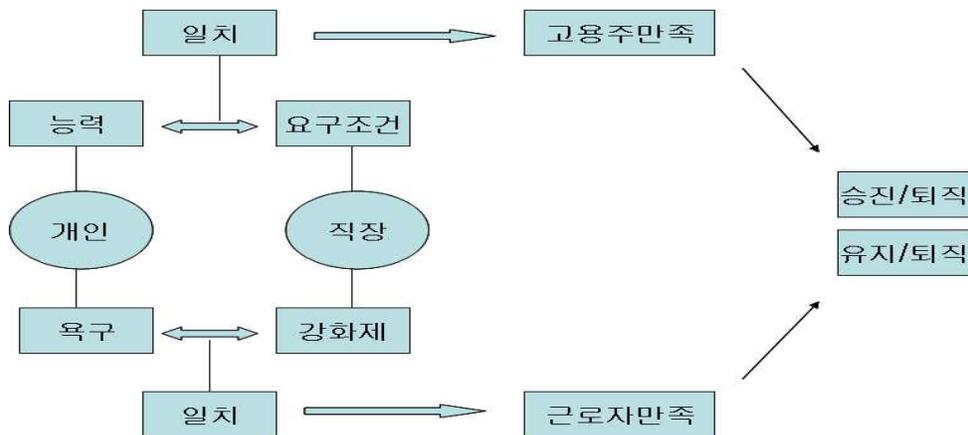
직업환경은 능력요구 사항과 강화체계로 구성된다.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과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적합성에 맞는 경우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능력과 작업 능력 요구사항 간의 일치도는 직업적합성을 예측하는데 이용된다. 근로자의 만족과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적합성, 이 두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장기적인 취업 혹은 지속적인 직업유지를 예측하는데 이용된다(이준우 외, 2010).

미네소타 직업적응이론에서는 직업에 대한 적응은 근로자의 능력과 욕구, 사업주의 능력요구사항과 강화요인간의 일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직업적응은 개인과 작업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근로자 만족도(job satisfaction)와 사업주 만족도(job satisfactoriness)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네소타 직업적응이론에서는 개인의 직업인성(work personality)은 직업능력과 직업욕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개인의 직업환경(work environment)은 직업요구조건과 직업강화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 개인의 직업인성과 직업환경 간의 일치정도에 따라 개인의 직업적응과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미네소타 직업적응 이론은 행동이 개인의 특성과 그 개인에 의해 해석된 환경적 특성간의 기능이라는 기본 전제에 따른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개인이 그들의 직업환경과의 일치를 성취하고 유지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며, 개인의 직업능력

이 어떤 특정 직업에 요구되는 조건들과 일치되면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만족(satisfactoriness)에 이르고, 반면에 개인의 직업욕구가 특정 직업이 주는 강화제들에 일치됨에 따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며,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satisfaction)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달엽, 1997; 이승욱·박은주, 2011).

미네소타 직업적응이론을 도식화 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미네소타 직업적응이론



출처: 이승욱·박은주(2011)

결국, 미네소타 직업적응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적 능력 및 욕구와 직업의 요구 조건들 및 직업보상 체계들 간의 일치 정도를 알 수 있으면 그 개인의 직업적응과 고용 안정은 예측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에 의한 충격은 개인의 직업적 욕구와 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애가 어떻게 한 개인의 직업적응을 저해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네소타 직업적응 이론의 요구되는 능력들은 실제로 직업을 보유한 만족할만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로 설정될 수 있고 강화체제들은 만족된 근로자에 대한 연구로 설정될 수 있다(이달엽, 1997).

제 2 절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실태

1. 장애인고용 현황

인간은 직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존재가치를 나타낸다. 직업을 통해 인생의 보람을 찾으며,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세, 사명감이 넘쳐흐르게 한다. 또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직업이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르는 기술 및 숙련인력의 확보는 과거의 단순한 노동이나 기능 인력의 확보에 비해 상당 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구직이나 입직의 문제보다 직업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는 직업재활이 매우 어렵다(이달엽, 2004).

과거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라 하면 보호된 고용환경 속에서 간단한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업적 능력을 형성해 주거나 단순 생산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교육하거나 훈련하는 차원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은 장애인고용을 어떻게 하면 창출하며 동시에 고용안정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 직업재활의 핵심은 장애인고용에 있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은 사회적으로는 재정 자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립성,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에 대해 높은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포용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이준우 외, 2010).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현재 250만 명으로 2000년 12월 말 96만 명에서 약 162% 급증하였다. 장애인구의 증가는 장애범주 확대, 고령화, 국가의 다양한 장애인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애인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적합한 정책마련과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표 2-4]와 그림 [그림 2-3]은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2-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p)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 활 률	실 업 률	고 용 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2010년	2,376,431	915,217	855,158	60,059	38.5	6.6	36.0
	2013년	2,457,626	940,379	885,025	55,354	38.3	5.9	36.0
	증 감	81,195	25,162	29,867	-4,705	-0.2	-0.7	0.0
전체 인구	2010년	40,533,000	25,099,000	24,306,000	793,000	61.9	3.2	60.0
	2013년	42,047,000	26,195,000	25,398,000	797,000	62.3	3.0	60.4
	증 감	1,514,000	1,096,000	1,092,000	4,000	0.4	-0.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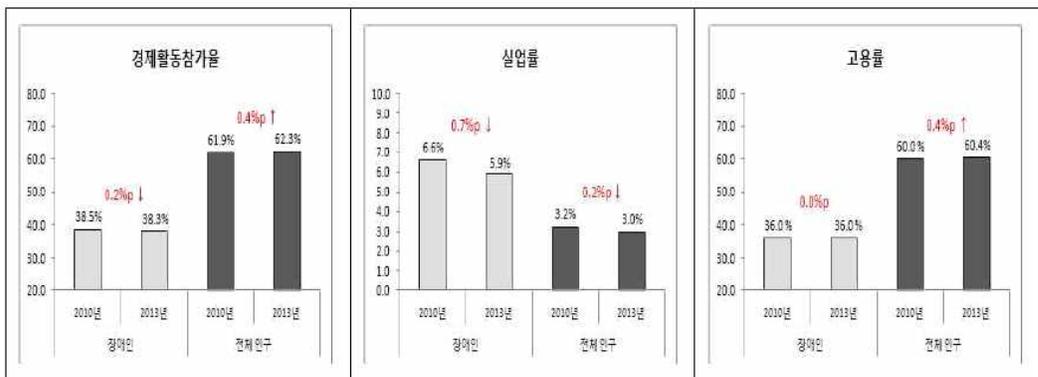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3년 5월) 참조

출처: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그림 2-3] 장애인, 전체 인구 경제활동상태 비교 (15세 이상 인구)



출처: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장애인 또는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실업률은 2~3배 이상 높은 점 등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자의 59.4%는 임금근로자, 40.6%는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 55.5%, 임시 25.1%, 일용 19.4%로 나뉘지며, 비임금근로자는 1인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17.4%, 혼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62.9%,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19.7%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5세 이상 인구, 2013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출처: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취업자는 전체 인구 취업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며,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크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대다수인 90.5%가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고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17.5%가 향후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56.6만원으로(2010년 대비 22.4만원 증가)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217.1만원의 72.1%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급여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의 경우 장애인 개인이 얻는 총소득의 41.1%가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3.6%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OECD 국가의 장애인 규모가 평균 14%로 우리나라 장애인 규모 4.6%에 비해 훨씬 크고 장애인가구 평균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85%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급여 수준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결국 우리사회의 장애인이 경험하는 고용여건은 정부로부터의 소득보장 급여는 낮고 따라서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큰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순노무직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되어 높은 이직유인이 상존하는 상시적 고용불안의 함정에 빠져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금현섭·이석원, 2008).

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란 근로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부상과 질병 그로 인한 사망 등이 포함된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살펴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1970~1980년대 산업화시기를 지나 1990~1998년 기간은 재해자수가 감소되던 시기로 분류되나, 1998년 재해자 수는 다시 증가하여 [표 2-5]를 보면, 2012년 기준 산업재해자수가 92,256명, 경제적손실추정액 약 19조 2천5백억 원이며 근로손실일수는 5천4백만 일에 달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표 2-5] 전년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연도	적용 사업장수 (개소)	대상 근로자수 (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²⁾ (%)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 백만원)			근로 손실 일수 ⁴⁾ (일)
			계	사망 ¹⁾	부상	신체 장애자	업무상 질병 이환자수		계	산재 보상금	간접 손실액 ³⁾	
2011	1,738,196	14,362,372	93,292	1,860	84,662	36,968	6,516	0.65	18,126,985	3,625,397	14,501,588	54,776,539
2012	1,825,296	15,548,423	92,256	1,864	83,349	37,323	6,742	0.59	19,256,435	3,851,287	15,405,148	54,520,730
증감 ⁵⁾ (%)	87,100 (5.01)	1,186,051 (8.26)	-1,036 (-1.11)	4 (0.22)	-1,313 (-1.55)	355 (0.96)	226 (3.47)	-0.06	1,129,450 (6.23)	225,890 (6.23)	903,560 (6.23)	-255,809 (-0.47)

※ 참고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 3) 간접손실액: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상

- 4) 근로손실일수: 신체장애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5) \text{증감}(\%) = \frac{2012\text{년도}}{2011\text{년도}} \times 100 - 100$$

- 6)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2 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933천일의 56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3. 재활사업의 도입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치료와 재활, 그들과 그 가족들의 최저생계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해오다가 1995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국가의 사회보험제도 내에 있으며, 이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범주 안에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의한 사업은 재해근로자의 보상, 재활 및 사회복지 촉진 그리고 근로자 재해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의 네 가지 사업으로 대별된다.

산재보험제도는 법률적 측면에서 크게 사회연대성의 원리, 인과성의 원리, 합목적성의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연대성의 원리’는 노동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인 취업자를 보호하고 노동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사회적으로 책무화 하도록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 없이 산재보험에 강제가입토록 함으로써 노동재해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기업의 파산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과성의 원리’는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사회보험급여를 통해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합목적성의 원리’에는 보호가 필요한 상태만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수준을 결정한다는 사회보장원리가 담겨져 있다(오선균, 2011).

이처럼 산재보험제도는 재해로 인한 구성원의 사회로부터 소외됨을 차단하고 요양 후 재활 및 사회복지촉진을 통해 연대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산재보험의 역할 또한 보상위주에서 재해자의 직업재활까지 확대·요구됨에 따라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양재성 외, 2012).

직업복귀를 포함한 산재보험 재활사업은²⁾ 2000년 개정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여 “재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시작되었다. 재활사업 도입이전 산재보험의 보상체계는 의료적 치료와 현금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보상시스템은 산재보험 종결 이후의 사후대책의 미비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요양장기화와 현금급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산재보험에서의 재활부문 정책을 강화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01년부터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년 단위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통해 10여 년간 운영되어오고 있다. 공단의 주요재활사업은 [표 2-6]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재활사업은 법정급여가 아닌 예산사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공공기금의 특성상 단기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체계적인 재활사업 전달체계 구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재활사업의 짧은 역사로 인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들의 전문성 부족 역시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면서 예산사업으로만 수행해 오던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 직장적응훈련, 그리고 재활운동지원과 같은 예산사업이 법정급여로 전환되었다.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고, 재활서비스가 산재장애인에게는 법적 권리의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재활서비스 이용인원은 [표 2-7]을 보면, 2003년 53,251명에서 2012년 82,669명까지 확대되었다(이승욱 외, 2013).

2) 재활사업은 산재로 인한 육체적 장애와 심리적, 정신적 충격 등에 놓인 산재근로자 특히 산재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직업복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단의 재활사업은 2000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1항에 ‘재활’이라는 개념이 반영되면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2005년)’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동법 제77조(후유증상의 진료), 제92조(근로복지사업), 제94조(장애급여자의 고용촉진)에도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내부규정에 의해 다양한 재활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표 2-6] 공단의 주요 재활사업 내용

단계	서비스 제공 내용	
산재 발생	재활상담	• 치료부터 직장복귀까지 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치료 중	의료재활	• 추가상병 치료, 병행치료, 전원(병원변경) 지원 • 집중재활서비스 제공 • 재해자 재활보조기구 지급
	심리재활	• 단계별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요양중: 희망찾기프로그램: 요양중 심리안정과 자기 삶의 통제력 회복지원(가족화합프로그램 지원) - 요양후: 사회적응프로그램: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재활스포츠	• 치료 중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수강료 지원
치료 종결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상병의 악화, 재발방지를 위한 진료지원 - 후유증상진료비용 지원
	사회재활	• 생활안정지원 - 대학학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양비 대부) • 산재근로자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학비전액) • 생활보호시설운영(강원, 경기케어센터)
직업 복귀	원직장복귀	•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면담 등을 통한 원직장복귀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
	직업훈련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취업알선	• 재취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취업정보 제공 - 고용지원센터 및 민간취업 알선기관 취업 의뢰
	창업지원	•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임대점포 및 창업 컨설팅 지원

출처: 이승욱 외(2013)

[표 2-7] 재활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건, 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활상담	34,370	36,993	52,847	54,175	58,305	54,592	36,878	42,082	48,963	34,693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운영	14,302	20,481	26,346	31,038	37,560	37,794	33,499	33,861	33,163	34,612
직업훈련비용지원 (직업재활급여)	1,995	2,838	4,384	5,680	5,731	4,464 (36)	5,386 (747)	3,379 (1,303)	3,661 (3,008)	3,223 (2,862)
직장복귀지원금 (직업재활급여)	-	66	441	554	737	750 (13)	647 (293)	828 (716)	3,285 (3,254)	2,598 (2,589)
창업점포지원	154	142	151	149	125	105	129	108	60	57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341	501	406	504	523	794	545	593	549	399
재활스포츠비용 지원	1,427	1,193	1,808	2,544	3,385	3,479	3,863	3,265	3,333	2,740
진폐환자 취미활동지원	662	960	1,159	2,186	2,055	2,166	1,968	1,938	1,791	1,581
심리재활프로그램	-	-	-	-	-	-	546	2,655	3,178	2,766
합계	53,251	63,187	87,542	96,830	108,315	103,996	82,412	88,709	97,983	82,669

출처: 공단 내부자료

4.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현황

1) 직업복귀 현황

산재장애인이라 함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갖는 중도장애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고 있다.

2011년에만 해도 산재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36,842명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산재로 장애를 입게 된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 이전에 이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복귀는 재활과정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사업은 2001년에 도입되어 2008년부터는 직업재활분야를 법정급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사업 시행과 더불어 시작된 직업복귀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특히 직업복귀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는 원직복귀와 재취업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표2-8]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산재장애인 중 직업복귀자는 70.4%로 호주(92%), 뉴질랜드(88%), 독일(82%) 등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원직장복귀율(38.7%) 역시 외국의 80~90%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재활사업이 정부의 의도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직업복귀라 함은 근로생활을 유지하다 어떠한 이유로 실업을 하게 되고 일정시간 후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원직장복귀라 함은 근로자가 취업한 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끝내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을 판정 받고 재해 당시 근무한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선영, 2012).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경우 가급적 조기에 다른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과정이 필요하다(박수경, 2011).

[표 2-8]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신규 장해자수	직업복귀				미취업	조사불능 ³⁾
		소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2011년 ⁴⁾ 4/4분기	36,842	25,943 (70.4)	14,264 (38.7)	9,972 (27.1)	1,707 (4.6)	9,614 (26.1)	1,285 (3.5)
2010년	37,338	23,940 (64.1)	13,670 (36.6)	8,528 (22.8)	1,742 (4.7)	11,507 (30.8)	1,891 (5.1)
2009년	35,569	20,334 (57.2)	12,511 (35.2)	6,684 (18.8)	1,139 (3.2)	12,330 (34.7)	2,905 (8.1)
2008년	37,178	19,950 (53.7)	12,962 (34.9)	6,031 (16.2)	957 (2.6)	13,905 (37.4)	3,323 (8.9)
2007년	36,553	18,220 (49.9)	12,216 (33.4)	5,223 (14.3)	781 (2.2)	13,459 (36.8)	4,874 (13.3)
2006년	38,872	17,681 (45.5)	11,794 (30.3)	5,472 (14.1)	415 (1.1)	15,095 (38.8)	6,096 (15.7)
2005년	37,119	15,680 (42.3)	10,144 (27.3)	4,958 (13.4)	578 (1.6)	13,225 (35.6)	8,214 (22.1)
2004년	34,320	14,420 (42.0)	9,829 (28.6)	4,060 (11.8)	531 (1.6)	11,576 (33.7)	8,324 (24.3)
2003년	30,363	12,192 (40.2)	8,663 (28.5)	3,302 (10.9)	227 (0.8)	10,448 (34.4)	7,723 (25.4)
2002년	26,546	10,627 (40.0)	7,421 (28.0)	3,017 (11.3)	189 (0.7)	5,666 (21.4)	10,253 (38.6)

- 직업복귀율 : [직업복귀자(원직복귀+재취업+자영업)/신규산재장해인] × 100

- 취업자 인정 기준 : ILO 기준에 의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 적용

출처 : 근로복지공단(2012)

- 3) 조사불능 사유로는 부재중 39.1%, 연락처변경 26.4%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출국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24.4%로 나타남.(부재중은 5회 이상 전화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본인 및 가족과도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임)
- 4) 2012년도부터 재활서비스 수혜대상자를 기준으로 통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까지 자료를 기재함.

2)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직업복귀 현황

[표 2-9]의 2011년도 사업장 규모별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현황을 살펴보면 원직복귀자가 55.0%, 재취업이 38.4%, 자영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원직복귀의 비중은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한정시켜 보면 원직복귀가 33.9%, 재취업 33.1%, 자영업이 6.6%로 원직복귀 비중과 재취업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30인 이상 사업장의 자영업 직업복귀는 전무한 실정이다.

즉 경쟁력 있는 사업장 규모의 자영업 보다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의 자영업 복귀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2-9]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직업배치 유형별 직업복귀 현황(2011년)

(단위 : 명, %)

구 분		계	직업배치 유형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계		25,943	14,264 (55.0)	9,972 (38.4)	1,707 (6.6)
사업장 규모	5인미만	9,617 (37.1)	3,159 (12.2)	4,780 (18.4)	1,678 (6.5)
	5~30인미만	9,459 (36.5)	5,627 (21.7)	3,805 (14.7)	27 (0.1)
	30~50인미만	1,457 (5.6)	1,097 (4.2)	359 (1.4)	1 (0.0)
	50~100인미만	1,391 (5.4)	1,033 (4.0)	358 (1.4)	- (0.0)
	100~300인미만	1,565 (6.1)	1,209 (4.7)	355 (1.4)	1 (0.0)
	300인이상	2,454 (9.4)	2,139 (8.2)	315 (1.2)	- (0.0)

출처 : 근로복지공단(2012)

재취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높게 직업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정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직업복귀와 원직복귀를 향상에 우선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양재성 외 2011).

3) 성별 직업복귀 현황

[표 2-10]에서는 2011년도 성별 직업복귀 비중에서는 남성 72.1%, 여성 64.2%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8%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복귀 형태별 현황에서는 원직복귀의 경우 남성이 38.8%, 여성이 40.3%를 자영업에서는 남성 5.2%, 여성 3.9%로 기록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과 유지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재취업의 경우 남성 28.0%, 여성 20.0%로 남성의 재취업 비중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0] 성별 직업복귀 현황(2011년)

(단위 : 명, %)

구 분	계	직업복귀				미취업	조사불능
		소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계	36,842	25,943 (70.4)	14,264 (38.7)	9,972 (27.1)	1,707 (4.6)	9,614 (26.1)	1,285 (3.5)
남 성	29,034	20,927 (72.1)	11,275 (38.8)	8,140 (28.0)	1,512 (5.2)	7,436 (25.6)	671 (2.3)
여 성	4,848	3,114 (64.2)	1,956 (40.3)	968 (20.0)	190 (3.9)	1,650 (34.0)	84 (1.7)
외국인	2,960	1,902 (64.3)	1,033 (34.9)	864 (29.2)	5 (0.2)	528 (17.8)	530 (17.9)

출처 : 근로복지공단(2012)

4) 연령별 직업복귀 현황

[표 2-11]의 2011년도 연령별 직업복귀 비중은 30대의 복귀율이 78.7%로 가장 높고 20대 75.1%, 40대 74.5%로 그 뒤를 이으면서 전체 직업복귀율 70.4%를 상회하는 반면, 60세 이상(55.2%) 경우 매우 낮은 직업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동일한 산재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심한 손상을 입게 되고 회복 역시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11] 연령별 직업복귀 현황(2011년)

(단위 : 명, %)

구 분	계	직업복귀				미취업	조사불능
		소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계	36,842	25,943 (70.4)	14,264 (38.7)	9,972 (27.1)	1,707 (4.6)	9,614 (26.1)	1,285 (3.5)
20세미만	168	71 (42.3)	26 (15.5)	45 (26.8)	- (0.0)	81 (48.2)	16 (9.5)
20대	2,313	1,738 (75.1)	1,121 (48.5)	571 (24.7)	46 (2.0)	451 (19.5)	124 (5.4)
30대	6,031	4,748 (78.7)	3,144 (52.1)	1,424 (23.6)	180 (3.0)	1,044 (17.3)	239 (4.0)
40대	10,539	7,852 (74.5)	4,452 (42.2)	2,921 (27.7)	479 (4.5)	2,308 (21.9)	379 (3.6)
50대	12,051	8,363 (69.4)	4,182 (34.7)	3,539 (29.4)	642 (5.3)	3,324 (27.6)	364 (3.0)
60세이상	5,740	3,171 (55.2)	1,339 (23.3)	1,472 (25.6)	360 (6.3)	2,406 (41.9)	163 (2.8)

출처 : 근로복지공단(2012)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다 빠르고도 완벽한 의료적 치료를 받고 치료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 없이 소득이 보장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져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재활과정을 통해서 직업적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다. 산재장애인이 재활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적 능력을 갖는 것은 경제적 의존성을 줄인다는 의미 이외에도, 개인에게 노동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개인의 존엄 및 만족과 관련이 깊다(박찬임 외, 2005).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는 일반적으로 원직장으로의 복귀여부가 결정된 이후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이 결정되는 흐름을 보이며 산재장애인에 있어 원직장복귀는 장애발생 이후 최초의 재취업기회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원직장복귀는 산재장애인 개인에게 실업기간을 줄이고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승렬, 2002).

이처럼 산재장애인을 포함하여 산재근로자 직업복귀가 중요한 분석과제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하는데 있어 단지 산재장애인의 장애정도 등 신체적 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직업복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승렬, 2004; 이승욱, 2006; 박은주·홍백의, 2012).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여야 특성에 맞는 직업복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적 요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관련 특성, 직업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이 있다. 이를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가족) 등이 직업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직업복귀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복귀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정도가 젊은 연령 계층과 비교하여 크고, 회복기간도 장기화되고, 완전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직업복귀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11년도 장애판정자 36,842명에 대한 공단의 취업실태조사에서도 30대의 복귀율이 78.7%로 가장 높고 20대 75.1%, 40대 74.5%로 그 뒤를 이으면서 전체직업복귀율 70.4%를 상회하는 반면, 60세 이상(55.2%) 경우 매우 낮은 직업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박수경 (1999)의 연구에서도 산재 장애인들은 30대를 기점으로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취업률이 45.7%로 가장 높았고, 2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승욱과 박은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원직복귀자의 연령은 주된 근로 층인 40대가 가장 높은 30.76%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50대(27%), 30대(25.29%), 60대 이상(13.13%), 20대(3.83%)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직업복귀에 따른 평균연령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미복귀 집단의 평균연령은 47.31세인 반면, 복귀 집단의 평균연령은 44.03세로 나타났다(이승욱, 2008).

이승렬(2003)은 신규 장애판정자를 대상으로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산재장애판정자의 취업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전직과 퇴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승렬(2004a)은 유사한 연구에서 재해근로자의 연령 등 개인적인 속성이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고연령층 산재근로자가 비록 요양종결 이후에 재해 당시의 직장에 복귀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고용유지가 어렵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인적자본이 낮은 수준이거나 노후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연령은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복귀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성별 또한 직업복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과 유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을 경험하여 노동시장에서 더욱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박수경, 1999; 유동철, 2000). 이승욱과 박은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원직복귀한 산재장애인의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88%, 여성이 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직복귀한 산재장애인이 원직복귀한 산재근로자와 비교하여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장애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원직복귀가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도 공단의 취업실태조사에서도 남성의 경우 직업복귀율이 72.1%로 미취업률 25.6%보다 46.5%p가량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직업복귀율은 64.2%로 미취업률 34.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중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근로자에 비해 산재근로자의 경우에 학력은 직장복귀를 결정짓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는 건설 및 제조업,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들의 경우 산재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게 되면 원직장복귀는 물론 타직장으로도 복귀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취업기간을 조사한 이승렬(2004a)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첫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직장복귀율을 조사한 연구(박수경·안치민, 2006)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원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만희 외 2009).

결혼상태나 부양가족 수 또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결혼을 하여 부양자가 존재하게 되면 미혼인 경우보다 생계유지 및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취업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전보영(2010), 류만희·김송이(2009), 박수경(1999)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이 재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광자(2003)의 연구에서는 부양가족 수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가족)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산재근로자의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재해관련 특성

재해관련 특성으로서 요양기간과 장애의 중증도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요양기간이 길수록 장애 중증도가 높을수록 직업복귀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승렬(2003)의 연구에서 산재장애인은 치료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가 어렵다고 나타났으며, 김재기(2004)의 연구에서도 요양기간이 개별적으로 취업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과 박은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원직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4.62%의 근로자들이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으며, 3~6개월 미만이 28.96%, 6개월~1년 미만이 18.6%, 1~2년 미만이 5.82%, 2년 이상이 2%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요양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중증도의 경우 산재장애인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직업복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보영, 2009; 박수경, 1999). 강희태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경우와 8~14 등급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1~7 등급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복귀율이 낮게 나타났다(박은주 외, 2012). 이 결과는 2011년도 장애판정자 36,842명에 대한 공단의 취업실태조사에서도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직업복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⁵⁾할 수 있다.

5) 산재보험에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1급부터 경미한 14급까지로 구분되며, 취업실태조사결과 13~14급 77.2%, 10~12급 71.1%, 8~9급 61.8%, 4~7급 53.6% 1~3급 21.7% 등 장애정도가 가벼울수록 직업복귀율이 높았다.

3. 직무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에는 산재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업종, 직종, 근무기간, 정규직 여부, 회사규모, 업무성격 및 사업장에서의 배려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승렬(2003)은 산재 당시 사업장 규모가 작았거나 산재장애인이 생산직이나 건설업·운수업·광업 등의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 전직과 퇴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판(reputation)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 등이 산재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주의 사업장에서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사업주의 배려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이승욱 외 2011). 이승욱·박혜전(2007)의 연구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에 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장복귀가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규모도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승욱·박은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사업장규모가 작아질수록 원직복귀자수가 많지 않았으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제조업·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종사자가 복귀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 심리사회적 특성

산재이후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기능적 변화로 인해 산재장애인은 한 집안의 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에서 요양을 받거나 재활기간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더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역할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천성장애인이거나 여성과 노인에 비해 산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장애를 수용하기 더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에게 산재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산재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장애

수용을 돕는 심리사회적 재활과정은 이들의 직업복귀나 사회복귀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수경 외, 2011).

이러한 산재장애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나아가 사회복귀를 위한 선행요건이 될 수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수경(1999)은 산재장애인의 심리적 요인을 도입하여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즉, 자신의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승욱 · 박혜전(2007)은 사회적용 자신감이 높을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높아짐을 보였다. 반면, 이승욱·박은주(2011)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업유지형태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5.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최근까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 대부분은 특정 변인과 관련된 분석유형에 집중되어 있어 다차원적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특히,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가 선진국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의 평가나 효과성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직업유지 요인의 범주를 보면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업능력 요인, 사회환경 요인, 근로환경 요인, 가족 요인, 직업재활서비스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관련 특성, 직

무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 등 다차원적인 변인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검증하고자 하는 심리적 변인은 산재장애인 근로자 개인의 내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최근 비장애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내면적 성장을 통한 직업성공을 위해 코칭 등 심리사회적 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이채식 외, 2013).

또한, 선행연구들은 산재장애인이 복귀한 직장의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여부에 대한 답변에는 ‘예/아니오’로 이분화되어 모든 복귀를 동일한 복귀로 간주한다. 그래서 모든 복귀를 성공적인 복귀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복귀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은 자칫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박은주, 2012).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변동이 없는 원직장복귀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복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직무관련 변수들을 설정하여 원직장 복귀자에 대한 고용의 질을 함께 파악하였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재해관련 특성요인, 직무관련 특성요인, 심리적인 특성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이를 근거로 적절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유지에 긍정적인 지원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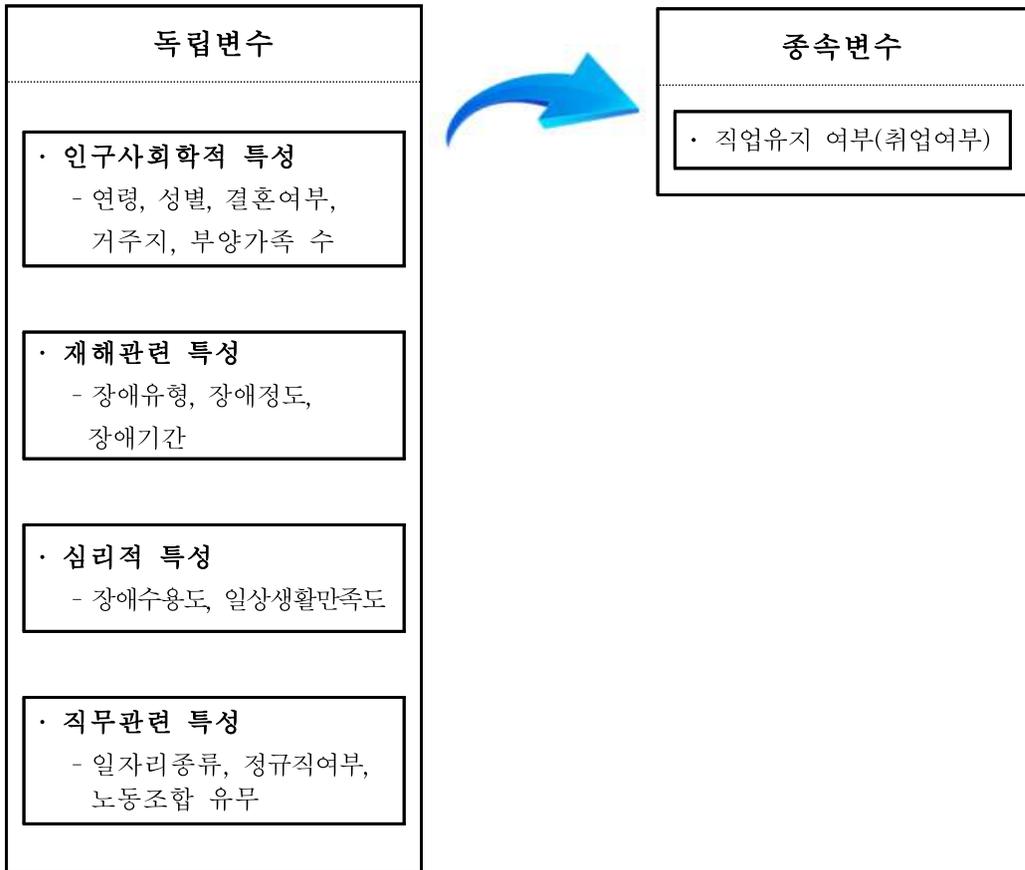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원직장복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비교·분석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표본의 직장복귀상황을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원직장복귀자와 퇴사자 집단의 구분은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질문항목 중 ‘일자리에서 발생한 질환 및 사고로 인하여 당시 다니던 일자리를 자의나 타의에 의해 그만두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대상자를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 질환 및 사고가 발생한 군을 산재장애인으로 정의하고 다시 산재장애인을 첫째, 해당 질환 및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일자리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응답한 군은 ‘원직장복귀자’로 둘째, 해당 질환 및 사고로 다니던 인해 다니던 일자리를 자의 또는 타의로 그만두었다라고 응답한 군은 ‘퇴사자’로 정의 하여 이들 집단 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이 차례로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모형이 확장되며, 종속변수는 직업복귀 여부이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산재장애인 직업유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표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가설

연령은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 직업경험이나 숙련도가 높아져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산재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와 고령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 직업복귀가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김지원, 2013). 산재근로자의 연령은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복귀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성별 또한 직업복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의 진입과 고용유지 측면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역할 인식이나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김지원, 2013). 이승욱과 박은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산재장애인의 연령이 낮고 여성 보다는 남성에서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일반근로자에 비해 산재근로자의 경우에 학력은 직장복귀를 결정짓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는데 산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이 전문직·사무직보다 직업복귀 가능성이 낮다. 결혼상태나 부양가족수 또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결혼을 하여 부양자가 존재하게 되면 미혼인 경우보다 생계유지 및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취업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남성일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2. 연령이 낮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3.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4.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5.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2. 재해관련 특성에 대한 가설

다음으로는 산재장애인의 신체적 중증도 및 요양기간 등의 요양특성도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장애등급으로 측정된 산재근로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인 1급~6급을 사용하여 신체적 중증도의 변수로 삼았다. 아울러 장애유형별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사용하는 변수인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장애로 구분하여 각각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요양기간이 길수록 직업유지의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인고용패널에서는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산재장애인의 장애기간을 변수로 하여 직업유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산재장애인의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상병으로 인한 중증도가 낮아서 직업복귀 확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집단 간 재해관련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장애유형별로 직업유지는 비슷할 것이다.
- 2-2. 장애가 경증일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2-3.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3.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가설

윤조덕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산재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 특히 선천성장애인이나 조기 장애인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특성(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첫째, 산재장애인의 경우 선천성 장애자 및 조기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보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며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인다. 둘째, 산재장애인의 경우 일반 장애인보다 국가나 기업, 사회에 대한 보상심리가 강하다. 셋째, 산재장애인은 정신지체인 등과 같은 선천적 장애인과는 달리

전문기술 및 직장경험이 있고 직장복귀에 대한 의욕이 높다. 넷째, 산재장애인의 문제는 산재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가족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산재장애인의 경우 80%이상이 기혼자로 산재사고 이후 장애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크다(산재발생 당시의 평균연령: 약 40세).

이러한 산재장애인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유지의 선행요건이 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이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직업유지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사회적응 자신감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확률이 높아짐을 보였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생활만족도의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직업유지가 높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집단 간 심리적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장애수용도가 높은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3-2.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4. 직무관련 특성에 대한 가설

직무관련 특성은 원직장복귀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재장애인이 복귀한 원직장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직장복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직무관련 특성에는 산재장애인이 근무하는 일자리 종류, 노동조합 유무, 정규직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승욱과 박은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제조업·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종사자가 복귀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직업유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비정규직 등에 비해 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어 업무 몰입도가 높아 직업유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4. 집단 간 직무관련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일자리종류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4-2. 정규직인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4-3. 노조가 있는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업유지 여부이다. 먼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여부는 취업과 미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나누고 취업한 집단을 직업유지 집단으로 미취업한 집단을 직업미유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취업과 미취업은 본 연구에서는 PSED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취업자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하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입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도 평소 해오던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전보영, 2010).

이러한 취업자의 범위에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있다. 미취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데, 실업자란 생산

가능 인구 중 일할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지난 주 또는 지난 4주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네 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인데 산재장애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부양가족 수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더미 처리하였으며, 연령은 통합데이터에서 출생연월을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유배우(결혼, 동거), 이혼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부양가족 수는 PSED의 설문문항 중 가구원수를 채택하였으며 1명, 2명, 3명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재해관련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인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기간을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재해관련 특성으로 PSED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장애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은 중증과 경증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 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관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장애기간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이 세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재해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심리적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용도와 생활만족도 변수를 구성하였다. 장애수용이란 장애로 인해 자신이 가치 절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장애를 단지 불편함이나 제한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PSED에서는 장애수용도와 관련 12문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3문항을 역점수 처리하여 12개 문항의 평균값을 장애수용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일상생활만족도는 패널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변수이다. PSED에서는 가족, 친구관계, 주거, 여가활동 등 9개 문항으로 일상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개문항의 평균값으로 일상생활만족 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직장복귀 집단의 직무관련 특성의 변수들로 여기에는 일자리종류, 노동조합 유무, 정규직 여부 등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일자리종류는 정부종사자(공무원), 정부 외 공공기관종사자,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일자리 종사자 등을 공공기관으로 나머지 종사자들을 민간기관으로 구분 사용하였으며, 정규직, 비정규직은 PSED 분류체계를 따랐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보장, 비정규직은 한시적, 비전형, 파견,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된다. 노동조합 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표 3-2] 직업유지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방법	
종속변수	직업유지(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범주변수: 남자, 여자
		2. 연령	연속변수: 만 연령
		3. 결혼여부	범주변수: 미혼, 유배우(결혼, 동거), 이혼 등(이혼, 사별, 별거)
		4. 거주지	범주변수: 서울, 광역시, 기타시도
		5. 부양가족 수	연속변수 : 가구원수 1명, 2명, 3명이상
	재해관련 특성	1. 장애유형	범주변수: 신체외부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 감각장애
		2. 장애정도	범주변수: 중증, 경증
		3. 장애기간	연속변수
	심리적 특성	1. 장애수용도	리커트 5점 척도, 12문항의 평균값
		2. 일상생활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9문항의 평균값
	직무관련 특성	1. 일자리 종류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구분
		2. 정규직여부	정규직여부 : 정규직, 비정규직
		3.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유무 : 있음, 없음

제 4 장 실증 분석

제 1 절 변수별 기술통계 분석

1.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남성이 84.7%, 여성이 15.3%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원직장복귀자와 퇴사자 집단 간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는 전체적으로 50대가 많아서 41.8%를 차지하였으며,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18.6%, 30대 이하가 3.8%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55.72세였다. 연령대에서는 원직장복귀자 집단에서 퇴사자 집단보다 50대 보다는 6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원직장복귀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퇴직자 집단의 평균 연령인 55세 보다 높았다. 거주지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시도가 61.6%, 광역시가 23.6%, 서울이 14.8%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압도적으로 많은 70.6% 차지했으며, 미혼이 7.3%, 이혼·사별·별거가 22.1%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원직장복귀자 집단이 84.7%인 반면 퇴사자 집단에서는 66.1%로 원직장복귀자 집단의 기혼이 퇴사자 집단의 기혼 보다 18.6%가 더 높았다.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과반수(61.4%) 차지하였으며, 고졸이 31.9%, 대졸 이상이 6.6%였다. 학력은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 모두 초·중·고졸 이하가 가장 많았다.

분석대상자의 가구원수는 3명 이상이 49.7%, 2명 34.3%, 1명 16.0%를 차지하였다. 가구원수는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에서 3명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평균가구원수는 원직장복귀자 집단이 2.44명인데 반해 퇴직자 집단에서는 2.30명으로 원직장복귀자 집단이 높았다.

[표 4-1]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원직장복귀자	퇴사자	계
성별(n=770)			
남성	166(87.8)	486(83.6)	652(84.7)
여성	23(12.2)	95(16.4)	118(15.3)
연령(n=770)			
30대 이하	6(3.2)	23(4.0)	29(3.8)
40대	31(16.4)	112(19.3)	143(18.6)
50대	69(36.5)	253(43.5)	322(41.8)
60대 이상	83(43.9)	193(33.2)	276(35.8)
평균(표준편차)	57.02세(8.19)	55.30(8.53)	55.72세(8.48)
거주지(n=770)			
서울	11(5.8)	103(17.7)	114(14.8)
광역시	42(22.2)	140(24.1)	182(23.6)
기타시도	136(72)	338(58.2)	474(61.6)
혼인상태(n=770)			
미혼	4(2.1)	52(9.0)	56(7.3)
유배우(결혼,동거)	160(84.7)	384(66.1)	544(70.6)
이혼,사별,별거	25(13.2)	145(24.9)	170(22.1)
최종학력(n=770)			
초등졸이하	69(36.5)	222(38.2)	291(37.8)
중졸	37(19.6)	145(25.0)	182(23.6)
고졸	64(33.9)	182(31.3)	246(31.9)
대졸 이상	19(10.0)	32(5.5)	51(6.6)
가구원수(n=770)			
1명	16(8.5)	107(18.4)	123(16.0)
2명	73(38.6)	191(32.9)	264(34.3)
3명 이상	100(52.9)	283(51.3)	383(49.7)
평균(표준편차)	2.44명(0.65)	2.30명(0.76)	2.34명(0.7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n=770)			
하층	51(27.0)	353(60.8)	404(52.5)
중하층	114(60.3)	211(36.3)	325(42.2)
중상층	22(11.6)	17(2.9)	39(5.1)
상층	2(1.1)	0(0)	2(0.3)

분석대상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자신을 하층으로 42.2%는 중하층으로 5.1%는 중상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0.3%에 불과했다.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 간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퇴사자 집단에서는 한명도 없으며 원직복귀자 집단에서 중하층이 60.3%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에 퇴사자 집단에서는 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60.8%로 가장 많았다.

2) 재해관련 특성

분석대상자의 재해관련 특성을 보면, 그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자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체외부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은 82.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각장애 12.9%, 신체내부장애 2.7%, 정신적 장애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도 동일한 순서로 장애유형이 나타났다.

분석대상자를 PSED 분류체계에 따라 장애유형을 15개 장애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자 중 지체장애가 72.3%로 가장 많고 뇌병변 장애 9.7%, 시각장애 8.4%, 청각장애 4.3%, 신장장애 1.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15개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 간 신체외부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순으로 감각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신체내부장애는 원직장복귀자 집단에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순이었으나 퇴직자 집단에서는 신장장애, 호흡기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원직장복귀자 집단에서는 한 명도 없는 반면 퇴사자 집단에서는 12명의 정신적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분석대상자의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원직장복귀자	퇴사자	계	
신체외부장애 (n=638, 82.9%)	지체장애	139(93.3)	418(85.5)	557(87.3)
	뇌병변장애	9(6.0)	66(13.5)	75(11.8)
	안면장애	1(0.7)	5(1.0)	6(0.9)
	계	149(100)	489(100)	638(100)
감각장애 (n=99, 12.9%)	시각장애	24(66.7)	41(65.1)	65(65.7)
	청각장애	12(33.3)	21(33.3)	33(33.3)
	언어장애	—	1(1.6)	1(1.0)
	계	36(100)	63(100)	99(100)
정신적 장애 (n=12, 1.6%)	지적장애	—	5(41.7)	5(41.7)
	자폐성장애	—	—	—
	정신장애	—	7(58.3)	7(58.3)
	계	—	12(100)	12(100)
신체내부장애 (n=21, 2.7%)	신장장애	2(50.0)	7(41.2)	9(42.9)
	심장장애	1(25.0)	1(5.9)	2(9.5)
	호흡기장애	—	6(35.3)	6(28.6)
	간장애	1(25.0)	1(5.9)	2(9.5)
	장루,요루장애	—	2(11.7)	2(9.5)
	간질장애	—	—	—
계	4(100)	17(100)	21(100)	

다음으로 분석대상자의 장애등급(6개 등급)을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인 6급이 27.3%로 제일 높았고 3급이 20.8%, 5급이 18.3% 4급이 16.1% 순서로 나타났으며 중증인 1급과 2급은 각각 7.3%와 10.3%를 차지했다. 이를 집단 간으로 분석해 보면 원직장복귀자 집단에서는 6급 37.6%, 5급 25.9% 3급 14.8%, 4급 13.2%의 순서인 반면에 퇴사자 집단에서는 6급

23.9%, 3급 22.7%, 4급 17.0%, 5급 15.8%로 나타나고 있다. 중증인 1급과 2급은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이 각각 8.5%와 20.5%로 퇴사자 집단이 원직장복귀자 집단에 비해 장애중증도가 높았다.

PSED에서는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다시 범주화되어 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 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장애정도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자를 다시 중증, 경증의 장애정도로 살펴본 결과 중증과 경증이 각각 30.8%와 69.2%를 나타냈다. 이를 집단 별로 분석해 보면 원직장복귀자 집단의 중증비율이 16.9%인 반면에 퇴사자 집단은 중증비율이 35.3%로 나타나고 있어 원직장복귀자 집단 보다 퇴사자 집단의 중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표 4-3] 분석대상자의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단위: 명, %)

구분	원직장복귀자	퇴사자	계
장애등급(n=770)			
1급	6(3.2)	50(8.6)	56(7.3)
2급	10(5.3)	69(11.9)	79(10.3)
3급	28(14.8)	132(22.7)	160(20.8)
4급	25(13.2)	99(17.0)	124(16.1)
5급	49(25.9)	92(15.8)	141(18.3)
6급	71(37.6)	139(23.9)	210(27.3)
계	189(100)	581(100)	770(100)
장애정도(n=770)			
중증	32(16.9)	205(35.3)	237(30.8)
경증	157(83.1)	376(64.7)	533(69.2)
계	189(100)	581(100)	770(100)

3) 심리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중 장애수용도 12문항에 대하여 합산한 평균 점수를 [표 4-4]에서 살펴보면 5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다. 리커트 5점 척도에 배점된 점수(“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고려할 때 보통에 가까운 점수이다. 대부분의 설문에서 보통에 가까운 점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분석대상자의 장애수용도 평균

항목	원직장 복귀자 (n=184)	퇴사자 (n=568)	전체평균 (n=752)
장애수용도 합계	3.13	2.84	2.92
1.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함	4.14	3.68	3.79
2.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음	2.67	2.67	2.67
3.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속상함	2.53	2.25	2.32
4.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음	2.96	2.66	2.74
5. 장애인이지만 내 인생에 만족함	3.09	2.71	2.80
6. 장애 자체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	3.62	3.38	3.44
7.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	2.80	2.41	2.51
8. 장애 자체보다 정직이 더 중요함	3.61	3.48	3.51
9. 인생은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음	3.64	3.43	3.48
10.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만큼 재미있는 일이 많음	2.78	2.52	2.58
11.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음	2.68	2.44	2.50
12. 장애 때문에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	2.99	2.50	2.62

※ 1번, 3번, 7번 문항은 역점수화 처리하였다.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 간 장애수용도 점수는 원직장복귀자가 3.13점으로 퇴사자 집단의 점수 2.84점보다 0.3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두 집단 모두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문항 2번에서처럼 두 집단 모두 장애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되는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인 일상생활 만족도의 9문항에 대하여 합산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3.14로 나타났다. 장애수용도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본 일상생활만족도 점수는 가족관계, 결혼생활, 친구관계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집단 간 일상생활만족도는 원직장복귀자 집단의 경우 가족관계, 친구관계, 결혼생활 등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한 달 수입, 건강상태, 여가활동 등에서는 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퇴사자 집단의 경우 가족관계, 결혼생활, 친구관계 등이 만족도 점수가 높은 반면, 만족도 점수가 낮은 항목은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같았다.

분석대상자의 일상생활만족도는 [표 4-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4-5] 분석대상자의 일상생활만족도 평균

항목	원직장복귀자 (n=183)	퇴사자 (n=544)	전체평균 (n=727)
일상생활만족도 합	3.30	3.00	3.14
1. 가족관계	3.73	3.53	3.57
2. 친구관계	3.68	3.47	3.48
3. 살고 있는 곳	3.55	3.34	3.39
4. 건강상태	2.94	2.65	2.72
5. 한 달 수입	2.62	2.39	2.45
6. 여가활동	3.00	2.84	2.88
7. 현재 하는 일	3.21	3.13	3.15
8. 결혼생활	3.60	3.51	3.50
9. 전반적 일상생활	3.29	3.04	3.10

4) 직무관련 특성

분석대상자의 직무관련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자인 산재장애인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없거나(87.6%)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60.7%)이었고,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83.1%)인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산재장애인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으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나타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7만원의 69%에 해당되며, 이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56만원 보다 낮았다.

직무관련 특성을 집단 별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는 원직장복귀자 집단이 76.4%인 반면에 퇴직자 집단에서는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91.8%)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은 원직장복귀자 집단이 62.5%인데 반하여 퇴사자 집단은 원직장복귀자 집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8%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장규모는 두 집단 모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원직장복귀자 집단은 4.4%, 퇴직자 집단은 1.1%에 불과하다.

월평균임금은 원직장복귀자 집단의 평균이 203만원인데 비하여 퇴직자 집단은 130만원으로 집단 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원직장복귀자 집단 보다는 퇴직자 집단에서 근로조건이 한층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산재장애인들에게 직장을 그만 두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표 4-6]에 나타나 있다.

[표 4-6] 분석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단위: 명, %)

구분	원직장복귀자	퇴사자	계
노동조합 유무(n=267)			
있음	17(23.6)	16(8.2)	33(12.4)
없음	55(76.4)	179(91.8)	234(87.6)
계	72(100)	195(100)	267(100)
정규직 여부 (n=267)			
정규직	45(62.5)	60(30.8)	105(39.3)
비정규직	27(37.5)	135(69.2)	162(60.7)
계	72(100)	195(100)	267(100)
사업장 규모 (n=254)			
50인 미만	47(69.1)	164(88.2)	211(83.1)
50-100인 미만	6(8.8)	9(4.8)	15(5.9)
100-300인 미만	9(13.2)	9(4.8)	18(7.0)
300-500인 미만	3(4.4)	2(1.1)	5(2.0)
500인 이상	3(4.4)	2(1.1)	5(2.0)
계	68(100)	186(100)	254(100)
월평균임금(n=267)			
100만원 미만	9(12.5)	60(30.8)	69(25.8)
100-200만원 미만	35(48.6)	100(51.3)	135(50.6)
200-300만원 미만	12(16.7)	28(14.4)	40(15.0)
300만원 이상	16(22.2)	7(3.6)	23(8.6)
평균(표준편차)	203.56만원(132.15)	130.81만원(64.88)	150.43만원(93.69)

직종별로는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 모두 민간 또는 개인사업체 종사자가 83%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군인 등 정부기관 종사자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일자리 종사자가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분석대상자의 직종별 특성을 보면 [표 4-7]과 같다.

[표 4-7] 분석대상자의 직종별 특성

(단위: 명, %)

구분	원직장복귀자	퇴사자	계
직종(n=267)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60(83.3)	162(83.1)	222(83.1)
정부 외 공공기관	1(1.4)	6(3.1)	7(2.6)
법인단체	2(2.8)	5(2.6)	7(2.6)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7(9.7)	7(3.6)	14(5.2)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음	1(1.4)	3(1.5)	4(1.5)
시민, 종교단체	—	2(1.0)	2(0.7)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공공근로 등)	1(1.4)	9(4.6)	10(3.7)
기타	—	1(0.5)	1(0.4)
계	72(100)	195(100)	267(100)

분석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SED에서 사용한 일자리 만족도 12개 설문문항에 대하여 합산한 평균점수를 살펴보았다.

[표 4-8]에 나타난 일자리만족도 평균점수는 3.02로 일상생활만족도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대상자의 일자리만족도는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 간 보통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별 점수는 원직장복귀자 집단에서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취업의 안전성, 하고 있는 일” 순이었으며 퇴사자 집단에서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전반적 만족도, 하고 있는 일”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분석대상자의 일자리만족도 평균

항목	원직장복귀자 (n=72)	퇴사자 (n=195)	계 (n=267)
일자리만족도 합	3.10	3.0	3.02
1. 임금 또는 소득	2.88	2.63	2.70
2. 취업의 안전성	3.21	2.92	3.00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3.19	3.12	3.14
4. 근로환경	3.11	2.93	2.98
5. 근로시간	3.11	3.06	3.07
6. 개인의 발전가능성	3.03	2.89	2.93
7.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3.38	3.46	3.44
8. 인사고과의 공정성	3.15	3.07	3.09
9. 복리후생	3.07	2.78	2.86
10. 교육훈련 기회	2.83	2.88	2.87
11.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3.00	3.10	3.07
12. 전반적 만족도	3.14	3.12	3.12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직업유지 여부이다. 분석대상자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여부를 취업과 미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나누고 취업한 집단을 직업유지 집단으로 미취업 집단을 직업미유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직업유지 여부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 전체 집단 중 직업유지 집단은 55.7%로 직업미유지 집단 44.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원직장복귀자 집단과 퇴사자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원직장복귀자 집단에서는 직업유지가 76.2%로 상당히 높은 데 반해 퇴사자 집단은 49.1%로 직업유지 상태가 원직장복귀자 집단에 비해 27%나 낮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직업유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9] 분석대상자의 직업유지 현황

(단위: 명, %)

구분	일자리에서 발생한 질환 및 사고 발생자		계
	원직장복귀자	퇴사자 집단	
직업유지집단	144(76.2)	285(49.1)	429(55.7)
직업미유지집단	45(23.8)	296(50.9)	341(44.3)
계	189(100)	581(100)	770(100)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1.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은 두 변수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상관분석은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를 밝히고, 그 정도를 추정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 정도와 방향을 나타낸다(성태제, 2013).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로 분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2 미만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표시하고, 0.4 미만은 낮은 상관관계, 0.6 이상은 높은 상관관계로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4-10]와 같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절대값이 가장 큰 유의한 상관계수가 0.564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는 0.7보다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장상일, 2013).

따라서 모두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변수를 투입하였다. 유의한 보통 이상의 상관관계($|r| \geq 0.2$)를 보이는 관계로 ①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sigma=0.564$, $p<0.01$), ②정규직 여부와 노동조합 유무($\sigma=0.327$, $p<0.01$), ③장애등급과 장애수용도($\sigma=0.306$, $p<0.01$), ④정규직 여부와 직업유지($\sigma=-.288$, $p<0.01$)가 있다.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는 상호관련성을 띠고 있다. 장애수용도가 높을수록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일상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박수경·곽지영(2011) 연구결과인 일반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4-1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성별	나이	결혼 여부	거주지	부양 가족수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장애 기간	장애 수용도	일상생활 만족도	일자리 종류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	직업 유지
성별	1													
나이	.094**	1												
결혼 여부	.335**	.159**	1											
거주지	-0.001	-0.038	-0.031	1										
부양 가족수	-.229**	-.224**	-.310**	-0.016	1									
장애 유형	0.003	-0.021	0.006	-0.034	0.003	1								
장애 등급	0.018	0.031	-0.026	0.064	0.054	-.122**	1							
장애 기간	-.156**	0	0.007	-.102**	-0.025	-.129**	-.263**	1						
장애 수용도	-0.042	-.087*	-.090*	.119**	.169**	-.075*	.306**	-.108**	1					
일상생활 만족도	-.121**	-0.02	-.200**	.100**	.188**	-.082*	.135**	0.014	.564**	1				
일자리 종류	0.024	0.055	-0.011	-0.065	-0.013	0.034	-0.048	-0.017	0.02	0.113	1			
정규직 여부	0.058	.166**	0.03	-.138*	-0.033	-0.003	-0.085	0.107	-.276**	-.251**	0.097	1		
노동조합 유무	0.085	0.031	0.099	-.165**	-0.061	0.024	-.149*	-0.032	-.142*	-.198**	-0.032	.327**	1	
직업 유지	-0.05	.079*	-0.055	.150**	.083*	0.012	.171**	-.126**	.209**	.187**	-0.029	-.288**	-.208**	1

* p<0.05 ** p<0.01

다음으로는 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고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 정규직 여부와 직업유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일수록 직무 및 보수체계의 안정성이 높아 직업유지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박은주·홍백의(2012) 연구결과인 근속기간이 길었던 상용직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에도 종사상 지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2. 변수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PSED의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장애수용도는 12문항의 평균으로, 일상생활만족도는 9문항의 평균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에 대한 신뢰도석을 위해 측정방법으로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는 [표4-11], [표4-12]과 같다.

먼저, 장애수용도의 경우 측정 변수들의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들의 신뢰도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수용도의 설문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 α 계수 값은 문항전체의 신뢰도 계수를 크게 높이는 값이 없었다. 이는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이 없는 결과이므로 12항목 모두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표 4-11] 장애수용도 신뢰도 분석 결과

(단위: %)

번호	항 목 내 용	Alpha if Item Deleted	M	SD	비 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함	.857	3.79	1.09	3.2	12.9	14.1	41.0	28.9
2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음	.869	2.67	.860	8.4	33.0	42.4	15.6	0.7
3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속상함	.856	2.32	.955	18.6	45.5	23.5	10.5	1.9
4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음	.845	2.74	1.01	11.4	31.5	31.0	24.1	2.0
5	장애인이지만 내 인생에 만족함	.836	2.80	.925	8.4	28.3	39.4	22.7	1.2
6	장애 자체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냐가 더 중요함	.851	3.44	.752	1.3	8.8	37.8	48.9	3.2
7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	.858	2.51	.982	15.2	37.5	30.1	15.7	1.6
8	장애 자체보다 정직이 더 중요함	.856	3.51	.711	1.1	5.6	38.6	50.8	4.0
9	인생은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음	.857	3.48	.742	1.2	8.1	35.8	51.6	3.3
10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만큼 재미있는 일이 많음	.838	2.58	.965	14.6	31.3	36.0	17.3	0.8
11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음	.837	2.50	.906	13.8	36.8	35.5	13.4	0.4
12	장애 때문에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	.838	2.62	1.05	15.2	33.5	27.4	21.8	2.1
문항전체 신뢰도(Alpha)		.861							

일상생활만족도의 경우도 측정 변수들의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만족도의 설문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크론바하 알파계수 값은 문항전체의 신뢰도 계수보다 높아지는 값이 없었다. 따라서 9항목 모두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표 4-12] 일상생활만족도 신뢰도 분석 결과

(단위: %)

번호	항 목 내 용	Alpha if Item Deleted	M	SD	비 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관계	0.831	3.8	0.57	0.7	5.0	34.6	55.8	4.0
2	친구관계	0.837	3.74	0.55	1.1	6.6	38.1	51.4	2.8
3	살고 있는 곳	0.83	3.55	0.63	1.0	7.0	44.9	45.5	1.6
4	건강상태	0.84	3.03	0.92	8.4	35.8	32.1	22.3	1.3
5	한 달 수입	0.837	2.64	0.83	10.0	45.5	34.4	10.0	0.1
6	여가활동	0.826	3	0.70	2.7	23.8	56.4	16.9	0.3
7	현재 하는 일	0.821	3.16	0.69	1.2	12.4	57.1	28.7	0.7
8	결혼생활	0.835	3.6	0.58	0.2	2.9	46.0	48.6	2.2
9	전반적 일상생활	0.822	3.34	0.56	0.5	13.6	61.2	24.4	0.3
문항전체 신뢰도(Alpha)		.847							

제 3 절 회귀분석 및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 제 특성들이 어떻게 직업유지 형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하나의 종속변수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특히 종속변수가 2개의 범주일 때 이분형, 3개 이상의 범주일 경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①직업유지, ②직업미유지(미취업) 등 2개의 범주를 가지므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인 “직업유지여부”의 독립변수 분산-팽창요소(VIF)를 계산한 결과, VIF의 값이 10을 초과할 경우 경험법칙상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이 1.003~1.466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들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아 모두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잔차의 등분산성 등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므로(권세혁,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연구가설 1.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남성일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2. 연령이 낮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3.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4.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1-5.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을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4-13]와 같다.

[표 4-13]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1)

모형	B	SE	Wald	p	Exp(B)	
1	성별 (기준:남성)	.168	.270	.389	.533	1.183
	연령	.022	.012	3.334	.068	1.022
	결혼여부 (기준: 이혼 등)			8.459	.015	
	미혼	-.659	.583	1.276	.259	.517
	유배우(결혼동거)	.742	.328	5.121	.024	2.100
	거주지 (기준 기타시도)			16.193	.000	
	서울시	-1.322	.337	15.351	.000	.267
	광역시	-.316	.208	2.318	.128	.729
	부양가족 (기준: 3인이상)			.193	.908	
	부양가족 1인	-.174	.417	.174	.677	.841
	부양가족 2인	.000	.208	.000	.999	1.000
	상수항	-2.791	.730	14.606	.000	.061
-2LL			805.966			
Model χ^2			52.255(df=8, p=.000)			
Nagelkerke R ²			0.098			
분류정확도			75.5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52.255,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9.8%(Nagelkerke $R^2=.098$)이며, 관측된 결과와 예측 값을 비교한 분류정확도는 75.5%로 나타났다. 로그우도 함수 값을 이용해 계산한 결정계수 값은 오차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 값에 따라 결정계수 값이 달라지고 그 값도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결혼여부($p<.05$)와 거주지($p<.001$)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이혼·별거·사별자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확률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ext{Exp}(B)=2.100$),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재장애인이 기타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보다 직업유지확률이 더 높았다($\text{Exp}(B)=.267$).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연구가설 2. 집단 간 재해관련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장애유형별로 직업유지는 비슷할 것이다.
- 2-2. 장애가 경증일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2-3.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재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을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4-14]와 같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47.309,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8.9%(Nagelkerke $R^2=.089$)이며, 관측된 결과와 예측 값을 비교한 분류정확도는 75.7%로 나타났다.

투입된 재해관련 요인 중 장애등급($B=.260$, $p<.001$)과 장애기간($B=-.042$, $p<.05$)이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확률이 높았다.

[표 4-14] 재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2)

모형	B	SE	Wald	p	Exp(B)	
2	장애유형 (기준:신체외부장애)		5.120	.163		
	신체외부장애	.019	.578	.001	.974	1.019
	감각장애	.551	.611	.811	.368	1.734
	정신적장애	-19.683	1155.430	.000	.999	.000
	장애등급	.260	.061	18.157	.000	1.297
	장애기간	-.042	.019	4.713	.030	.959
	상수항	-1.802	.636	8.027	.005	.165
-2LL			809.783			
Model χ^2			47.309(df=5, p=.000)			
Nagelkerke R^2			0.089			
분류정확도			75.7			

장애등급이 한 단계 낮을수록 직업유지확률이 1.2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1.297),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유지확률이 더 높았다(Exp(B)=.959). 재해관련 특성으로서 장애기간과 장애의 중증도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직업복귀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요양기간(장애기간)이 길수록 장애 중증도가 높을수록 직업복귀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이승렬(2003)의 연구와 이승욱·박은주(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장애유형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가설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

3. 심리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연구가설 3. 집단 간 심리적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장애수용도가 높은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 3-2.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심리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을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4-15]와 같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40.413,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7.8%(Nagelkerke R^2 =.078)이며, 관측된 결과와 예측 값을 비교한 분류정확도는 75.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투입된 심리적 요인 모두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도가(B=.633, $p<.001$) 높을수록 또한 일상생활만족도가(B=.536, $p<.05$)가 높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

지확률이 높았다. 장애수용도의 경우 장애수용도가 1점 올라갈수록 직업 유지확률이 1.8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Exp(B)=1.884), 일상생활만족도 역시 1점 올라갈수록 직업유지확률이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1.710).

심리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이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직업유지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사회적응 자신감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확률이 높아짐을 보였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직업유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는 상호 관련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고려함에 있어서 장애정도 등 외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심리·사회적 직업복귀정책을 병행하여 이를 확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4-15] 심리적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3)

모형		B	SE	Wald	p	Exp(B)
3	장애수용도	.633	.191	11.050	.001	1.884
	일상생활만족도	.536	.214	6.288	.012	1.710
	상수항	-4.715	.627	56.609	.000	.009
-2LL				796.436		
Model χ^2				40.413(df=2, p=.000)		
Nagelkerke R ²				0.078		
분류정확도				75.7		

4. 직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연구가설 4. 집단 간 직무관련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일자리종류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4-2. 정규직인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4-3. 노조가 있는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직무관련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을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4-16]와 같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 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2LL$ 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25.780,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3.4%(Nagelkerke $R^2=.134$)이며, 관측된 결과와 예측 값을 비교한 분류 정확도는 73.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투입된 직무관련 요인 중 정규직 요인만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정규직($B=1.172$, $p<.001$)일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확률이 높았다. 즉 정규직 산재장애인이 비정규직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확률 보다 3.2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3.229$).

산재장애인은 재해로 인하여 손실된 노동생산성과 산재장애인이 희망하는 임금·근로조건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이전의 고용관계에 균열을 가져 올 수 있다. 산재장애인에 대하여 재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이는 곧 근속기간의 연장에 따른 노동 숙련도를 높이고 재해 이후에도 산재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에 직업유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반면에 일자리종류가 공공근무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가설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노동조합 존재여부도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분석대상자가 33명에 불과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6] 직무관련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모형4)

모형		B	SE	Wald	p	Exp(B)
4	일자리종류	.392	.519	.569	.451	1.480
	정규직 여부	1.172	.304	14.847	.000	3.229
	노동조합 유무	.683	.416	2.696	.101	1.981
	상수항	-1.674	.217	59.395	.000	.188
-2LL				285.501		
Model χ^2				25.780(df=3, p=.000)		
Nagelkerke R ²				0.134		
분류정확도				73.0		

5. 직업유지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검증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업유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종속변수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결혼여부($p<.05$)와 거주지($p<.001$)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별거·사별자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가 더 높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재장애인이 기타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보다 직업유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투입된 재해관련 요인과 종속변수인 직업유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장애등급($p<.001$)과 장애기간($p<.05$)이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과 종속변수인 직업유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종속변수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장애수용도가($p<.001$)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p<.05$)가 높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요인과 직업유지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p<.001$) 경우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종속변수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다시 선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7]와 같다.

먼저 본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Hosmer-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chi^2=9.140$, $p=.331$ 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4-17] 직업유지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검증(모형5)

모형	B	SE	Wald	p	Exp(B)
거주지 (기준: 기타시도)			7.567	.023	
서울시	-.882	.591	2.224	.136	.414
광역시	.677	.345	3.855	.050	1.968
결혼여부 (기준: 이혼 등)			.526	.769	
미혼	-.063	.822	.006	.939	.939
유배우(결혼동거)	.269	.442	.371	.542	1.309
장애등급	.317	.134	5.571	.018	1.373
장애기간	-.001	.032	.001	.979	.999
장애수용도	-.256	.374	.467	.494	.775
일상생활만족도	.204	.386	.280	.597	1.226
정규직여부	1.407	.323	18.928	.000	4.084
상수항	-3.294	1.390	5.617	.018	.037
-2LL			265.376		
Model χ^2			40.134(df=9, p=.000)		
Nagelkerke R ²			0.207		
분류정확도			72.8		
Hosmer-Lemeshow p			.331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40.134,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0.7%(Nagelkerke $R^2=.207$)이며, 관측된 결과와 예측 값을 비교한 분류 정확도는 72.8%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별 독립변수들을 선별하여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거주지 변수가($p<.05$), 재해관련 요인 중에서는 장애등급이($B=.317, p<.05$), 직무관련 요인 중에서는 정규직 여부가($B=1.407, p<.001$)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거주지 변수는 기타도시보다 광역시가 직업유지가 1.9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ext{Exp}(B)=1.968$), 재해관련 요인의 장애등급 변수는 산재장애인의 장애등급이 낮아질수록(경증일수록) 직업유지가 1.3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1.373$).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요인으로 산재장애인이 비정규직일 때 보다 정규직일 때 직업유지가 4.0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ext{Exp}(B)=4.084$).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유지하였을 경우 직업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거주지, 장애등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본 연구결과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이다. 즉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고용의 질이란 단순한 취업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도시보다는 광역시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 취업시장이 집중되어 있고 산재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역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15세 이상 인구 장애인 경제활동 지표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권에 73.1%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는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장애정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박은주·홍백의(2012) 연구결과에서도 산재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재해당시의 종사상지위에 상관없이 요양종결 이후 직업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더 많은 장애를 입은 근로자일수록 요양종결 이후의 직업복귀가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는 산재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형태이다. 정규직 고용형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인 네 가지 주요요인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답변한 분석대상자(105명) 중 남성이 압도적인 92.4%(97명)에 달하고 여성 비율은 7.6%(8명)에 불과했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과반수를 넘는 56.1%(59명)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이 20.1%(22명)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대졸이상의 비율인 3.1%(5명)의 약 7배의 비율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장애정도 역시 정규직 산재장애인의 85.7%(90명)가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아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직무관련 요인으로 노동조합의 유무는 산재장애인의 정규직 직업유지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정규직 비율이 25.7%(27명)에 불과했고 74.3%(78명)인 대부분의 정규직 산재장애인들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만족도 역시 정규직 산재장애인이(3.2점) 비정규직 산재장애인 보다(2.9점) 평균 0.3점도 높았으며 심리적 요인인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 평균 역시 정규직 산재장애인이 비정규직 산재장애인보다 각각 0.3점, 0.24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재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형태를 이루는 주요 변수들은 본 연구의 가설과 비교해 볼 때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직무관련 요인인 노동조합 유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설들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6. 가설 검증 결과

각 요인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가설 검증의 결과

가 설 내 용	지지 여부
<연구가설 1>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남성일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1-2> 연령이 낮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1-3>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1-4>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1-5>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연구가설 2> 집단 간 재해관련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장애유형별로 직업유지는 비슷할 것이다.	기각
<2-2> 장애가 경증일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2-3>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3> 집단 간 심리적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장애수용도가 높은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3-2>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연구가설 4> 집단 간 직무관련 요인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일자리종류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4-2> 정규직인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4-3> 노조가 있는 경우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이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는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원직장 복귀여부가 결정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의 재취업 여부가 결정된다.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는 재해이후 사회복귀의 첫 출발점이자 향후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재해가 발생한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일차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난 후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재해가 발생되기 전과 동일하게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는 이들의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동안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단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상병, 재활서비스 수혜여부,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특정 변인과 관련된 분석유형에 집중되어 있어 다차원적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단의 산재근로자에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전국단위의 장애인 고용패널을 활용하여 원직장 복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요소들을 종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해관련 요인, 심

리적 요인, 직무관련 요인 등 네 가지 특성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독립 변수를 구성하고 종속변수와 연결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더 경험하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 회복속도가 빠르므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장애인의 휴업급여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산재보험의 제도특성을 감안할 때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그만큼 원직복귀의 욕구가 강하리라 판단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가설을 수립하였다.

재해관련 요인으로는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를 제외하고는 직업유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장애 회복속도가 빨라 그만큼 직장복귀 및 직업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가설도 수립하였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장애인고용패널에서 활용되는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심리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요인으로는 전반적으로 고용환경이 안정적일 것이라 고려되는 요소를 선별하여 직업유지 여부와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일자리종류가 공공기관 종사자 일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일수록,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할 때 산재장애인들의 직업유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공표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일자리에서 발생한 질환 및 사고에 의해 주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인원 77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기혼),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이혼·별거·사별자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업유지확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재장애인이 기타시도에 거주하는 산재장애인 보다 직업유지확률이 더 높았다. 이에 비해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 경우,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직업유지확률에 대한 가설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원직장복귀자(189명) 중 여성비율이 12.2%(23명)에 불과해 전체 남성비율이 훨씬 크고 연령 역시 50대 이상의 원직장복귀자의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양가족수 변수는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실질적인 부양가족수에 해당되는 변수를 찾지 못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는데 가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재해관련 요인 중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가 경증일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장애기간과 장애중증도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으로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투입된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이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직업유지 확률이 낮고, 사회적응 자신감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확률이 높아짐을 보였다. 직무관련 요인 중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일자리종류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경우 직업유지에 대한 가설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원직장복귀자의 87.5%이상이 민간회사 등 비공공기관에 압도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며, 노조가 있다고 응답한 분석대상자가 17명에 불과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별 독립변수들을 선별하여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거

주지 변수가 재해관련 요인 중에서는 장애등급이 직무관련 요인 중에서는 정규직 여부가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세 변수 중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유지하였을 경우 직업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주로 활용했던 공단의 산재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전국단위의 장애인고용패널을 활용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업복귀지원정책에 필요한 경험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는 이들의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정책이다. 이렇게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포함한 직업유지가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장애인의 원직장복귀율이 38.7%에 불과해 선진국의 80~90%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장애인을 위한 원직장복귀 정책을 포함한 직업재활서비스제도가 정책의 의도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해고억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요양 종결 후 원직복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비용창출, 조기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직장복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복귀지원제도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그리고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직장복귀지원제도는 '03. 7. 1. 예산사업으로 직장복귀지원금이 도입되고, '06. 9. 1.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지원비 지원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후 '08. 7. 1. 직업재활급여에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포함되면서 현재 직업재활급여와 예산사업이 병행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를 포함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에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적 특성이나 인적자본 속성 역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혜택을 중소도시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직장으로부터 분리된 기간이 짧으므로 그만큼 직장복귀와 직장유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장애정도가 중증인 산재장애인은 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크고 요양기간이 장기화 되는 사유로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중증인 산재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경감할 수 있는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장애수용도와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산재장애인들에게 장애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지 산재장애인 중 원직복귀자 집단의 정규직 비율이(62.5%) 퇴직자 집단의 정규직 비율(30.8%)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일수록 원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신속한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때 산재장애인의 고용여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장애인들이 장애를 입은 후에도 원하는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직업 재활 및 훈련에 재원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매년 공표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중 2013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재장애인의 취업유지 여부만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이차 자료 분석의 한계로 고용의 질적 측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원직복귀자의 경우 장애인고용패널이 시작된 2008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어느 정도 복귀한 직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퇴직자의 경우 단기취업과 장기취업을 구분하기 힘들었고 고용의 질을 평가할 월평균임금의 변수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되어 이를 반영할 수가 없었다.

둘째, 통제변수나 독립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수가 있어도 결측치가 많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산재장애인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이 선행연구에서 직업복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답변자가 무응답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를 제외하였다.

셋째, 2013년도 한해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의한 변수의 결과가 지속성이 있는 결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설문항목을 추가하여 다각적인 산재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외된 몇 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의한 결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고용노동부(2012a), 『201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_____ (2012b),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2012년~2014년)』 .
_____ (2013), 『고용노동백서(2013년판)』 .
- 권세혁(2007), 『통계소프트웨어 SAS·SPSS 활용중심 회귀분석』, 경기: 자유아카데미.
- 근로복지공단(2012), 『신규 산재장해인 취업실태조사 결과 보고』 .
- 금현섭·이석원(2008), 『장애인정책연구』, 경기: 법문사.
- 김농주(1999), 『직업상담사』, 서울: 도서출판 무한.
-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호진·최종철·양수정(2013),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문선화·이상호·김종윤·장수한·배의식·김현주 공저(2013), 『장애인 복지-이론과 실천-』, 경기: 양서원.
- 보건복지부(2004),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세계보건기구(WHO) 번역본.
- 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 변용찬·김성희·윤상용·최미영·계훈방·권선진·이선우(2005),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박자경(2010),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지속성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자경·김종진·강용주(2009), 『장애인근로자 직무만족도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찬임·최기춘·최재동·최윤영(2005),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

- 체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성태제(2013),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이달엽(1997), 『재활과학론』, 서울: 형설출판사.
- _____ (2003a), 『장애와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3b), 『지체장애근로자의 직업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_____ (2004),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배치』, 서울: 학지사.
- 이승렬(2002), 『주요국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제도-미국·캐나다·프랑스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3),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5), 『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욱(2008),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연구』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연구원.
- 이승욱·박은주(2011), 『산재장애인 직업적응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 이승욱·오종은·김경하(2013),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 이준우·김성태(2010), 『장애인직업재활개론』, 경기: 서현사.
- 유완식·임수정·김동일·박희찬·홍성두(2012), 『직업적 장애기준과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윤조덕·박수경·박정란·권선진·이현주·진혜량(200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 양수정·최종철·류정진·김호진(2011),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전리상(2006),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논문>

- 강희태·임형준·김용규·주영수·이화평·김정민·권영준(2006),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및 원직복귀 예측 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18(3), 221-231.
- 고덕기(1997), 산재병원 입원 환자들의 직장복귀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99), 장애발생시기와 귀인양식이 장애수용과 우울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재기(2004), 산업재해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2013),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길명(1973), 한국공장노동자의 직업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만희·김송희(2009),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161-184.
- 민소영 (1995),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수급기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조업체 경장해 산재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현(2005), “인구고령화가 산재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보장연구」, 21(4), 117-135.
- 박성미(1999), “직업적응이론의 성격구인에 대한 고찰”,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85~198.
- 박수경(1997), 산업재해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1999),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4), 171-193.
- _____ (2012),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 요인”,

- 「재활복지」, 16(3), 293-318.
- 박수경·곽지영(2011),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관련요인”, 「재활복지」, 15(4), 261-281.
- 박은주·홍백의(2012), “산재근로자의 산재경험 후 종사상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2), 121~152.
- 이승렬(2004a),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 이후 취업기간에 관한 분석”, 「산재보험포럼」, 64-82.
- _____ (2004b), “요양종결 이후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분석”, 「노동경제론집」, 27(3), 25-52.
- 이승욱(2006),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승욱·박혜전(2007),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직업재활연구」, 17(1), 69-99.
- 이은진(1993), 장애인 직업재활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주형·김영철(2002),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인과관계 연구”, 「관광경영연구」, 6(1), 217-241.
- 이채식·김명식(2011),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483-5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_____ (2013),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제 특성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3(1)(통권 78호), 327-356.
- 오선균(2011),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은헌정·이선미·장광철(199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다면적 인성검사 특성”, 「신경정신의학」, 33(2), 353-364.
- 양재성·오순복·임성수(201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요양종결후 장해판정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3), 153~177.

- 조광자(2003), 산재장애인의 이직장복귀 가능성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보영(2010),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장상일(2013),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전략적 선택 이론과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원(1991), “산업재해환자의 다면적 인성검사 비교연구”, 「서울의대 정신의학」, 125(9), 226-234.
- 정선영(2012), 원 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숙·임채기·최재욱·강성규·염용태(2002), “일부산업재해 환자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신경정신의학」, 41(3), 461-471.
- Dawis, R.(1996), The theory of work adjustment and person-environment-correspondence counseling. In D. Brooks, & Associates (Eds.)
- Dawis, R. V., & Lofqist, L. H. (1976). Personality style and the process of work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55-59.
- Dawis, R. V., & Lofq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ransky, G., Gatchel, R., Linton, S. J., & P. Loisel. (2005). Improving return to work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5, 453-457.
- Ridley, M. (1993). *Evolution*.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Science.
- Unger, D. (2002). Employer'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force.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 2-10.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https://edi.kead.or.kr>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Job Retention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s

- Focusing on the Disabled Returning to the Previous Workplace -

Jong-Beom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to promote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normal social life for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job retention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most seriously taken into account. Job retention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return to the previous workplace is important policywise in that it can minimize social costs, enhance their early return to social life and sustain their stable vocational life.

Using the fifth Panel Survey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of

2013,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factors influencing job retention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n present empirical and specific grounds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which enable them to sustain their jobs. From the above-mentioned panel data, 770 respondents whose major disabilities were caused by illnesses and accidents in workplaces were selected as the final research objects. Depending on the return to their previous workplaces after disabilities, they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 returners and non-returners – then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job retention were analysed by comparing those two groups.

In this study, putting previous studies together, the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four; sociodemographic factor, disaster-related factor, psychological factor, and work-related factor. Each factor has its own independent variables as follows; gender, age, the presence of spouse, location of residence and the number of family dependents for the sociodemographic factor, types of disabilities, degree of disabilities, period of disabilities for the disaster-related factor, acceptance of disabilities, and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or the psychological factor, and types of jobs, permanence of jobs and member of labor union for the work-related factor. Then the hypotheses were set up to relate those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dependent variable, i.e., the job re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sociodemographic factor, presence of spouse and residence in big cities had a meaningful effect on the job retention. Second,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disaster-related factor, minor disabilities and short period of disabilities had a meaningful effect on the job retention. Third,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psychological factor, high acceptance

level of disabilities and high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had a meaningful effect on the job retention. Fourth,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work-related factor, only high permanence of job had a meaningful effect on the job retention. Lastly, when the independent variables having a meaningful effect on the job retention were selectively put in, the residence variable of the sociodemographic factor, degree of disabilities of the disaster-related factor, permanence of job of the work-related factor turned out to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job retention. Also, among the abov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the job retention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s was the permanence of job. That is, when the employment status was permanent, the job retention was shown to be the highest.

From the results abo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turn of the disabled by the industrial accidents can be derived. First, rather than quantitative approach, qualitative approach reflecting characteristics and demands of the individuals is needed to support their return to the work. Second, together with selective policies taking account of the degree of labor inability, the expans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habilitation service should be an important political consideration. Lastly, a thoughtful political approach is required in terms of employment status which proved to be the most meaningful factor affecting return to work of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s.

**Key Word : the Disabled by Industrial Accidents, Job Retention,
Return to the Previous Workplace,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Disabled**

Student Number : 2013-22634